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고시 개정 안내

-
1. 관련근거 : 가.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66호(2012.12.21)
 2.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"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"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-158호, 2011.12.20)이 붙임과 같이 개정·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개정 고시문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병원장

대리 정윤학 차장 류향수 전문위원 박상우 국장 최금숙

시행 : 보험 제 2012-661 (2012.12.26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7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jyh@kha.or.kr